금융분쟁조정세칙



[시행 2023. 11. 2.] [금융감독원세칙, 2023. 11. 1., 일부개정]

금융감독원(금융민원국), 02-3145-5513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장 제2절, 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한다)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(이하 "감독원"이라 한다)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1, 3, 25.)

제2조(적용범위)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·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(개정 2021. 3. 25.)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신청인"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.
- 2. "피신청인"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.
- 3. "당사자"라 함은 당사자 일방(신청인 또는 피신청인) 또는 당사자 쌍방(신청인 및 피신청인)을 말한다.
- 4. "조정대상기관"이라 함은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5. "금융분쟁"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,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.(개정 2021. 3. 25.)

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개정 2021. 3. 25.)

제4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1. 3.

25.)

- ② 삭제 (2021. 3. 25.)
- ③ 삭제 (2021. 3. 25.)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위원장 및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: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

- 2. 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 :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
- 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,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 부원장보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제7조(조정위원회의 회의)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(은행, 증권, 비은행 등)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(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)전까지 구성하며, 위원장이 소집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회의는 매월 첫째주(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셋째주) 화요일과 셋째주(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다섯째주)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(신설 2016. 10. 1)

제7조의2(위원의 제척, 기피 및 회피) 삭제 (2021. 3. 25.)

- 제8조(간사)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간사는 감독원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으로 한다.
 -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,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(개정 2021. 3. 25.)
- 제9조(의사록) ①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・보관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 10. 1)
 -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(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,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 10. 1. 2021. 3. 25.)
 -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조정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**제10조(전문위원)** ① 원장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02. 2. 22, 2011. 1. 21, 2016. 10. 1, 2008. 1. 11. 2021. 3. 25.)
 - ② 전문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,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,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등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. (개정 2018. 1. 11.)
 - ③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 위원 및 전문위원 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(개정 2000. 11. 22. 2021. 3. 25.)
 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법 제38조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"조정위원회 위원"은 이를 "전문위원"으로 보고, "심의·의결"은 이를 "자문"으로 본다.(신설 2016. 10. 1. 2021. 3. 25.)
- ⑥ 삭제 (2021. 3. 25.)
- 제10조의2(전문소위원회) ① 법률 또는 의료사항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문소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8. 1. 11.)
 - ② 전문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장 조정의 신청 등

- 제11조(분쟁조정신청) ① 조정대상기관,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(이하 "조정신청"이라 한다)할 수 있으며 원장에게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(이하 "조정신청서"라 한다)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
 - 3. 25.)
 - 1.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- 2.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
 - 3.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(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)
 - 2.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
 - 3. 신청의 취지
 - 4. 신청의 이유
 - ③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진정서, 탄원서 기타 민원서류 중 그 내용이 이 세칙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- ④ 분쟁처리 담당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는 즉시, 처리부서, 담당자 직성명, 전화번호 등을 유선, 전자우편, 문서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(신설 2002. 2. 22)
- 제11조의2(자율조정절차 등) ① 원장은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에 앞서 신청인과 조정대 상기관이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원장은 분쟁조정사건의 내용·성격 등이 금융·보험거래와 무관하거나 우리원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율조정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.
- **제12조(대표자의 선정)**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.
-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있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한다.
- ⑤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들을 위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조정신청의 취하, 피신청인과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대리인의 선임) 당사자는 변호사, 기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조정신청의 중간회신) ① 감독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중 사실조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부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원장은 지연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금융분쟁조정기록부에 조정신청의 접수, 보완,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조정신청의 보완) ① 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·전화·문서·우편·전신·모사전송(FAX)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. 11.)
 - ② 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6조(사실조사 등) ①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09. 12. 31)
 - ②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감정, 조회 기타 필요한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 - ③ 조정대상기관에 대한 금융분쟁에 관련된 사실조사는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이 관할한다. 다만, 소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검사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(개정 2009. 12. 31. 2021. 3. 25.)
 - ④ 제3항에 의한 검사 및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감독원의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⑤ 삭제 (2018. 1. 11.)
 - ⑥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목적, 조사내용, 조사기간 등을 조사출장 3일 전까지 유선, 전자우편, 문서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(신설 2009. 12. 31)
 - ⑦ 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기관의 위법·위규사항이 발견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 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여야 한다.(신설 2009. 12. 31)

⑧ 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사본을 송달하거나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(신설 2018, 1, 11.)

제4장 감독원장의 분쟁처리

- 제17조(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) ①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6. 10. 1. 2021. 3. 25.)
 - 1.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. 다만,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 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2.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
 - 3.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 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. 이 경우 보완요구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4.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
 - 5.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6.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
 - 7.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
 - 8.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부당하거나 관련법령, 조정선례,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
 - 9. 금융·보험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개정 2009. 12. 31, 2018. 1. 11.)
- 제17조의2(처리기간의 계산) 사건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처리를 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. [본조신설 2018. 1. 11.]
- **제17조의3(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)** 조정신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 - 1.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감독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)(개정 2021. 3. 25.)
 - 2.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조회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공휴일 및 토요일
- 제17조의4(처리기간의 연장 등) ①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7조의2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7조의5(처리결과의 통지)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조정신청은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. 11.]

- 제17조의6(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) 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, 그 후에 접수되는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.
 - ②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정신청의 성격, 종전 조정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・관련성 및 종전 조정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조정신청의 취하 등) ① 신청인은 사건명,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취하서를 우편・모사전송(FAX) 등으로 제출하거나 유선(녹취 등)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. 11.)
 - ②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등 이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진행의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진행을 중지하고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. 11.)
 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원장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정신청을 취하한 신청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18. 1. 11.)
 - ④ 당해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제19조(소 제기 등의 통지) ① 분쟁조정 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당해 사건의 관할법원
 - 2. 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
 - 3. 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
 - 4.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사유 (신설 2018. 1. 11.)
- 6.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심급별 소송결과 (신설 2018. 1. 11.)
- ② 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21. 3. 25.)
- 제20조(합의권고) ①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20조의2(제3자 의견 구속력) 의료사항 등에 대한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제 20조 제1항에 의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정한 제3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수 있으며,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제20조의3(재검토요구) 원장은 법률, 기존의 조정위원회 조정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21. 3. 25.) [본조신설 2018. 1. 11.]
- 제21조(합의 불성립) 당사자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권고절차진행을 위한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제5장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(개정 2021, 3, 25.)

- 제22조(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부사건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1.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직접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0조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가.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 중 조정위원회가 인용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의 가액
 - 나. 신청된 분쟁조정의 조정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
 - 다.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조정위원회 결정례 또는 법원 판례의 존재
 - 라. 기타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사항
 - 3.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 - ② 조정위원회는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회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00. 11. 22. 2021. 3. 25.)
- ③ 제2항의 기피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00. 11. 22)
- ④ 제1항 제3호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준용한다.(신설 2018. 1. 11.)
- 제23조(자료제출 등)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원장은 조정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제24조(당사자 등의 의견청취) ①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.
 -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·감정인·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4조의2(사전심의)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전심의할 수 있다.(개정 2021. 3. 25.)
 - 1. 다수인이 신청한 사건으로서 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
 - 2. 제10조의2의 전문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 - 3.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사전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5조(결정)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의 내용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있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③ 제2항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
 - 2. 조정 또는 각하결정사항
 - 3. 조정 또는 각하결정이유
 - 4. 조정 또는 각하결정일자
- 제26조(심의·의결 결과통보) 조정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심의·의결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
제27조(원장의 재의 요구) 삭제 (2021. 3. 25.)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8조(조정결정 등의 통지)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(부분인용 포함)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.(개정 2002. 2. 22. 2021. 3. 25.)
 - 1.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
 - 2.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(개정 2021. 3. 25.)
 - 3.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
- 제29조(조정의 성립 등) ① 당사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 - ② 당사자쌍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조서 3부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(개정 2021, 3, 25.)
 -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이 조정결정수락서를 확인하여 조정조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1부를 교부 또는 송달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이내에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 - ⑤ 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.
 - ⑥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**제30조(처리결과의 통보 및 보고)** ① 원장은 조정결정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.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제29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3. 25.)
- 제31조(재조정신청)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개정 2021. 3. 25.)
 - 1.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, 증인의 증언,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
- 3.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,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
- 4.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(개정 2021. 3. 25.)
- 5.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
- ②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처리한다.

제6장 보 칙

- 제32조(분쟁조정의 공표)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(개정 2021. 3. 25.)
- 제32조의2(소송지원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 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05. 8. 26. 2021. 3. 25.)
 - 1.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(개정 2021. 3. 25.)
 - 2.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 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(개정 2021. 3. 25.)
 - ② 삭제 (2011. 1. 21)
 - ③ 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신설 2005. 8. 26.)
 - 1.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2.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3. 소송지원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
 - ④ 기타 소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(개정 2005. 8. 26)
- 제32조의3(사건개입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감독원 담당직원에게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를 종용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감독원 담당직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33조(수당 등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, 출장비,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02. 7. 26)

- 1. 제7조에 의하여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(개정 2021. 3. 25.)
- 2. 위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
- 3. 제10조에 의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의 전문가 등이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(개정 2021. 3. 25.)
- 4. 제24조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요청한 감정인·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(개정 2021. 3. 25.)
- 5. 삭제 (2021. 3. 25.)

제33조의2(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개정건의) 위원은 원장에게 이 세칙 중 조정위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34조(세부사항 등)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 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칙 <제호,2023.11.1.>

제1조 이 세칙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